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중국 1 등주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3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5 조(판매가격)	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

		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<신설>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0 년 0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5 조의 규정 개정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. 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30 일

에 관한 사항		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※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일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China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3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5 조(판매가격)	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

		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<신설>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0 년 0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5 조의 규정 개정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. 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30 일

에 관한 사항		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※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일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중국 1 등주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3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5 조(판매가격)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

		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<신설>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0 년 0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5 조의 규정 개정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. 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

	운용전문인력 (생략) **매입방법** · 17시 이전 :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7시 경과 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	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**매입방법** · 17시 이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7시 경과 후 :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* 202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30 일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※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일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인 Best 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3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5 조(판매가격)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

		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<신설>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0 년 0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5 조의 규정 개정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. 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	매입방법 · 17시 이전 :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7시 경과 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	**매입방법** · 17시 이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7시 경과 후 :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* 202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30 일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2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※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일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China 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3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5 조(판매가격)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부칙	<신설>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0 년 0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5 조의 규정 개정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. 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매입방법** · 17시 이전 :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7시 경과 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**매입방법** · 17시 이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7시 경과 후 :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* 202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30 일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※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일은 2020 년 10 월

		05 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재팬코어플러스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3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5 조(판매가격)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

		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<신설>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0 년 0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5 조의 규정 개정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. -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

	(생략) **매입방법** · 15시 이전 :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5시 경과 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	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**매입방법** · 15시 이전 :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· 15시 경과 후 :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* 202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30 일 기준가격 컷오프제도 변경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가격 기준일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3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) 오후 3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※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일은 2020 년 10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제 4 부	라. 운용자산규모	라. 운용자산규모
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